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 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[채권-재간접형]

2. 주요 변경내용

- 자투자신탁 추가
-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
3. 변경효력발생일 : 2020 년 09 월 20 일

4. 대비표

[집합투자규약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 3 조 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	제 3 항 1. ~ 5. (생략) <추가> 6. ~ 10. (생략)	제 3 항 1. ~ 5. (생략, 현행과 동일) 6. 하나 UBS 행복한 TDF2050 증권자투자신탁[주식혼합-재간접형] 7. ~ 11. (생략, 현행과 동일)
제44조(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)	①~③ (생략) <신설>	①~③ (현행과 동일) ④제 1 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수익자는 제 39 조와는 별도로 투자신탁 보수를 지급해야 하며, 이는 다음 각 호에 의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 단,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에 동의한 경우, 또는 법 제 64 조제 1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1. 보상금액: 제 39 조 3 항 각호에 따른 보수율 * 변경시행일 전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 * 제 2 호의 대상기간 일수 2. 대상기간: 변경시행일로부터

		6 개월간. 단, 신탁계약 종료일이 정해져 있고 변경 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의 신탁계약기간이 6 개월 미만인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변경 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. 3. 지급시기: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변경시행일 ⑤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제 4 항 적용과는 별도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수익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
[변경등록신청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	**1.집합투자기구의 명칭** [자집합투자기구의 명칭] <추가>	**1.집합투자기구의 명칭** [자집합투자기구의 명칭] 하나 UBS 행복한 TDF2050 증권자투자신탁[주식혼합-재간접형] (DA457)
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<추가>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2020 년 09 월 20 일 - 자투자신탁 추가(하나 UBS 행복한 TDF2050 증권자투자신탁[주식혼합-재간접형])
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(생략)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(운용경력, 운용현황, 수익률 업데이트)
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	**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** 다. 모자형구조 <추가>	**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** **나. 모자형구조** 자투자신탁명: 하나UBS 행복한TDF2050증권자투자신탁[주식혼합-재간접형] / 펀드코드: DA457
제 4 부	**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**	**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**

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다.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(생략) 라. 운용자산규모 (생략)	다.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(업데이트) 라. 운용자산규모 (업데이트)

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 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[주식-재간접형]

2. 주요 변경내용

- 자투자신탁 추가
-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
3. 변경효력발생일 : 2020 년 09 월 20 일

4. 대비표

[집합투자규약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 3 조 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	제 3 항 1. ~ 5. (생략) <추가> 6. ~ 10. (생략)	제 3 항 1. ~ 5. (생략, 현행과 동일) 6. 하나 UBS 행복한 TDF2050 증권자투자신탁[주식혼합-재간접형] 7. ~ 11. (생략, 현행과 동일)
제44조(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)	①~③ (생략) <신설>	①~③ (현행과 동일) ④제 1 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수익자는 제 39 조와는 별도로 투자신탁 보수를 지급해야 하며, 이는 다음 각 호에 의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 단,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에 동의한 경우, 또는 법 제 64 조제 1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1. 보상금액: 제 39 조 3 항 각호에 따른 보수율 * 변경시행일 전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 * 제 2 호의 대상기간 일수 2. 대상기간: 변경시행일로부터

		6 개월간. 단, 신탁계약 종료일이 정해져 있고 변경 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의 신탁계약기간이 6 개월 미만인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변경 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. 3. 지급시기: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변경시행일 ⑤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제 4 항 적용과는 별도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수익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
[변경등록신청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	**1.집합투자기구의 명칭** [자집합투자기구의 명칭] <추가>	**1.집합투자기구의 명칭** [자집합투자기구의 명칭] 하나 UBS 행복한 TDF2050 증권자투자신탁[주식혼합-재간접형] (DA457)
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<추가>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2020 년 09 월 20 일 - 자투자신탁 추가(하나 UBS 행복한 TDF2050 증권자투자신탁[주식혼합-재간접형])
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(생략)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(운용경력, 운용현황, 수익률 업데이트)
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	**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** 다. 모자형구조 <추가>	**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** **나. 모자형구조** 자투자신탁명: 하나UBS 행복한TDF2050증권자투자신탁[주식혼합-재간접형] / 펀드코드: DA457
제 4 부	**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**	**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**

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다.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(생략) 라. 운용자산규모 (생략)	다.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(업데이트) 라. 운용자산규모 (업데이트)

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 UBS 글로벌롱숏플러스증권모투자신탁[주식혼합-재간접형]

2. 주요 변경내용

- 자투자신탁 추가
-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
3. 변경효력발생일 : 2020 년 09 월 20 일

4. 대비표

[집합투자규약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 3 조 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	제 3 항 1. ~ 7. (생략) <추가> 8. (생략)	제 3 항 1. ~ 7. (생략, 현행과 동일) 8. 하나 UBS 행복한 TDF2050 증권자투자신탁[주식혼합-재간접형] 9. (생략, 현행과 동일)
제44조(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)	①~③ (생략) <신설>	①~③ (현행과 동일) ④제 1 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수익자는 제 39 조와는 별도로 투자신탁 보수를 지급해야 하며, 이는 다음 각 호에 의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 단,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에 동의한 경우, 또는 법 제 64 조제 1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1. 보상금액: 제 39 조 3 항 각호에 따른 보수율 * 변경시행일 전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 * 제 2 호의 대상기간 일수 2. 대상기간: 변경시행일로부터

		6 개월간. 단, 신탁계약 종료일이 정해져 있고 변경 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의 신탁계약기간이 6 개월 미만인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변경 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. 3. 지급시기: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변경시행일 ⑤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제 4 항 적용과는 별도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수익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
[변경등록신청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	**1.집합투자기구의 명칭** [자집합투자기구의 명칭] <추가>	**1.집합투자기구의 명칭** [자집합투자기구의 명칭] 자투자신탁명: 하나UBS 행복한TDF2050증권자투자신탁[주식혼합-재간접형] / 펀드코드: DA457
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<추가>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2020 년 09 월 20 일 - 자투자신탁 추가(하나 UBS 행복한 TDF2050 증권자투자신탁[주식혼합-재간접형])
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(생략)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(운용경력, 운용현황, 수익률 업데이트)
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	**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** 다. 모자형구조 <추가>	**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** **나. 모자형구조** 자투자신탁명: 하나UBS 행복한TDF2050증권자투자신탁[주식혼합-재간접형] / 펀드코드: DA457

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**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** 다.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(생략) 라. 운용자산규모 (생략)	**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** 다.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(업데이트) 라. 운용자산규모 (업데이트)